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매매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의 청구원인 사실은, ① ‘매매 계약(계약일, 목적물, 대금) 체결 사실’, ②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③ ‘대금 지급 기한의 도과’, ④ ‘목적물의 인도’, ⑤ ‘손해의 발생 및 범위’³²⁸⁵⁾이다.

민법 제587조³²⁸⁶⁾ 후문에 따라, 매매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

3285) 민사법정비용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397조에 의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민사법정비용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고,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연 6%의 상사법정비용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그 약정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다.

3286)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문상 ‘이자’의 성질이 ‘법정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주석민법